「특허법」

[법률 소화 34<1959>년제 121 호, 2018.5.30. 최종개정]

원문	번역문
第二章 特許及び特許出願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第二十九条（特許の要件） 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次に掲げる発明を除き、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특허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의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一 特許出願前に日本国内又は外国において公然知られた発明	1.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公然)히 알려진 발명
二 特許出願前に日本国内又は外国において公然実施をされた発明	2.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
三 特許出願前に日本国内又は外国において、頒布された刊行物に記載された発明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公衆に利用可能となつた発明	3.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2 特許出願前に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前項各号に掲げる発明に基いて容易に発明をすることができたときは、その発明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때에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

第二十九条の二 特許出願に係る発明が当該特許出願の日前の他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登録出願であつて当該特許出願後に第六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掲載した特許公報（以下「特許掲載公報」という。）の発行若しくは出願公開又は実用新案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三号）第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掲載した実用新案公報（以下「実用新案掲載公報」という。）の発行がされたもの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の外国語書面出願にあつては、同条第一項の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又は考案（その発明又は考案をした者が当該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発明者と同一の者である場合におけるその発明又は考案を除く。）と同一であるときは、その発明について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当該特許出願の時にその出願人と当該他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登録出願の出願人とが同一の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29조의2**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그 발명출원일 이전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후에 제6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특허공보(이하 “특허게재공보”라 한다)의 발행, 출원공개 또는 「실용신안법」(소화34<1959>년 법률 제123호)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실용신안공보(이하 “실용신안게재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발명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제36조의2제2항의 외국어서면출원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외국어서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考案)(그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해당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발명자와 동일인인 경우의 그 발명 또는 고안을 제외한다)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 다만, 해당 특허출원 시에 그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三十条（発明の新規性の喪失の例外）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意に反して第二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は、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ら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２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行為に起因して第二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発明、実用新案、意匠又は商標に関する公報に掲載されたことにより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ものを除く。）も、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前項と同様とする。 ３　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を記載した書面を特許出願と同時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かつ、第二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が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発明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次項において「証明書」とい	**제30조**(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에 대한 제1항 및 동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됨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도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에 대한 제1항 및 동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다. ③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며,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면(제4항에서 “증명서”라 한다)을 특허출원일

う。）を特許出願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証明書を提出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前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証明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ら十四日（在外者にあつては、二月）以内でその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証明書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가 그 책임없는 이유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서 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그 증명서를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 削除	**제31조 삭제**
第三十二条（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発明） 公の秩序、善良の風俗又は公衆の衛生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発明については、第二十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
第三十三条（特許を受ける権利） 特許を受ける権利は、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 2　特許を受ける権利は、質権の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特許を受ける権利が共有に係るときは、各共有者は、他の共有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その持分を譲渡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33조**(특허를 받을 권리) ①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에 관련된 때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4　特許を受ける権利が共有に係るときは、各共有者は、他の共有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その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仮専用実施権を設定し、又は他人に仮通常実施権を許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에 관련된 때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할 특허권에 대하여 가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第三十四条	**제34조**
特許出願前における特許を受ける権利の承継は、その承継人が特許出願をしなければ、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① 특허출원 전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同一の者から承継した同一の特許を受ける権利について同日に二以上の特許出願があつたときは、特許出願人の協議により定めた者以外の者の承継は、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자가 아닌 사람의 승계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同一の者から承継した同一の発明及び考案についての特許を受ける権利及び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権利について同日に特許出願及び実用新案登録出願があつ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③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4　特許出願後における特許を受ける権利の承継は、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の場合を除き、特許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④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特許を受ける権利の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があつたときは、	⑤ 특허를 받을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때에

承継人は、遅滞なく、その旨を特許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특허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同一の者から承継した同一の特許を受ける権利の承継について同日に二以上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届出をした者の協議により定めた者以外の者の届出は、その効力を生じない。	⑥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한 사람의 협의로 규정한 자가 아닌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第三十九条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は、第二項、第三項及び前項の場合に準用する。	⑦ 제3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三十四条の二（仮専用実施権）	**제34조의2**(가전용실시권)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は、その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記載した事項の範囲内において、仮専用実施権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할 특허권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仮専用実施権に係る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があつたときは、その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専用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専用実施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② 가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전용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3 仮専用実施権は、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実施の事業とともにする場合、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承諾を得た場合及び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の場	③ 가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실시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및 상속, 그 밖의 일반

合に限り、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 4 仮専用実施権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仮専用実施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専用実施権について、他人に仮通常実施権を許諾することができる。 5 仮専用実施権に係る特許出願について、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があつたときは、当該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専用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専用実施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6 仮専用実施権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があつたとき、その特許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若しくは審決が確定したときは、消滅する。 7 仮専用実施権者は、第四項又は次条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者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の承諾を得た場合に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가전용실시권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가전용실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가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분할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관련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전용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정 행위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때, 그 특허출원이 포기, 철회 또는 각하된 때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멸한다. ⑦ 가전용실시권자가 제4항 또는 제34조의3제7항 본문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자인 때에는 이들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限り、その仮専用実施権を放棄することができる。 8 第三十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仮専用実施権に準用する。	한하여 그 가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⑧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가전용실시권에 준용한다.
第三十四条の三（仮通常実施権）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は、その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記載した事項の範囲内において、他人に仮通常実施権を許諾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に係る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があつ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その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 3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に係る仮専用実施権について専用実施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その専用実施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	**제34조의3**(가통상실시권)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가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４　仮通常実施権は、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実施の事業とともにする場合、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仮専用実施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専用実施権についての仮通常実施権にあつて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及び仮専用実施権者）の承諾を得た場合及び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の場合に限り、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 ５　第一項若しくは前条第四項又は実用新案法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に係る第四十一条第一項の先の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当該先の出願が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の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同条第一項の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に基づいて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があつ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当該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④ 가통상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실시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전용실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한 가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및 가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및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4조의2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제41조제1항의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해당 선출원이 제36조의2제2항 외국어서면출원인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외국어서면)에 기재된 발명에 기초하여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게 해당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정 행위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仮通常実施権に係る特許出願について、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があつ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当該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⑥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분할출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게 그 특허분할출원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관련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정 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前条第五項本文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の仮専用実施権（以下この項において「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仮専用実施権」という。）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当該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もとの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の仮専用実施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専用実施権についての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当該新たな特許出願に係る仮専用実施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専用実施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	⑦ 제34조의2제5항 본문 규정에 따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할 특허권에 대한 가전용실시권 (이하 이 항에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련된 가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것으로 본 때에는 그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련된 원래의 특허출원 관련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한 가전용실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그 새로운 특허출원 관련 가전용실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그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다

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만, 해당 설정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実用新案法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について、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当該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⑧ 「실용신안법」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그 출원 변경에 관련된 특허출원 관련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정 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意匠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五号）第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に係る意匠登録出願について、第四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に対し、当該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基づいて取得すべき特許権について、当該仮通常実施権の設定行為で定めた範囲内において、仮通常実施権が許諾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設定行為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⑨ 「의장법」(소화34<1959>년 법률 제125호) 제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그 출원 변경에 관련된 특허출원 관련 특허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여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설정 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１０　仮通常実施権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があつたとき、その特許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若しくは審決が確定したときは、消滅する。 １１　前項に定める場合のほか、前条第四項の規定又は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る仮通常実施権は、その仮専用実施権が消滅したときは、消滅する。 １２　第三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仮通常実施権に準用する。	⑩ 가통상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때, 그 특허출원이 포기, 철회 또는 각하된 때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멸한다. ⑪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34조의2제4항 규정 또는 제7항 본문 규정에 따른 가통상실시권은 그 가전용실시권이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다. ⑫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가통상실시권에 준용한다.
第三十四条の四（登録の効果） 仮専用実施権の設定、移転（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るものを除く。）、変更、消滅（混同又は第三十四条の二第六項の規定によるものを除く。）又は処分の制限は、登録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２　前項の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の場合は、遅滞なく、その旨を特許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34조의4**(등록의 효과) ① 가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 변경, 소멸(혼동 또는 제34조의2제6항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특허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三十四条の五（仮通常実施権の対抗力） 仮通常実施権は、その許諾後に当該仮通常実施権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仮専用実施	**제34조의5**(가통상실시권의 대항능력) 가통상실시권은 그 허락 후에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권리, 가전용실시권

権又は当該仮通常実施権に係る特許を受ける権利に関する仮専用実施権を取得した者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第三十五条（職務発明）	**제35조**(직무발명)
使用者、法人、国又は地方公共団体（以下「使用者等」という。）は、従業者、法人の役員、国家公務員又は地方公務員（以下「従業者等」という。）がその性質上当該使用者等の業務範囲に属し、かつ、その発明をするに至つた行為がその使用者等における従業者等の現在又は過去の職務に属する発明（以下「職務発明」という。）について特許を受けたとき、又は職務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権利を承継した者が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たときは、その特許権について通常実施権を有する。	① 사용자,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성질상 해당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자 등의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때 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従業者等がした発明については、その発明が職務発明である場合を除き、あらかじめ、使用者等に特許を受ける権利を取得させ、使用者等に特許権を承継させ、又は使用者等のため仮専用実施権若しくは専用実施権を設定することを定めた契約、勤務規則その他の定めの条項は、無効とする。	②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가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규정한 계약, 근무 규칙, 그 밖의 규정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従業者等がした職務発明については、契約、勤務規則その他	③ 종업원 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계약, 근무 규칙, 그

の定めにおいてあらかじめ使用者等に特許を受ける権利を取得させることを定めたときは、そ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その発生した時から当該使用者等に帰属する。	밖의 규정에서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할 것을 규정한 때에는 그 특허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용자 등에게 귀속한다.
4 従業者等は、契約、勤務規則その他の定めにより職務発明について使用者等に特許を受ける権利を取得させ、使用者等に特許権を承継させ、若しくは使用者等のため専用実施権を設定したとき、又は契約、勤務規則その他の定めにより職務発明について使用者等のため仮専用実施権を設定し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四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専用実施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相当の金銭その他の経済上の利益（次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相当の利益」という。）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④ 종업원 등은 계약, 근무 규칙,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 또는 근무 규칙,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가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제3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 때에는 상당한 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제5항 및 제7항에서 “상당한 이익”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契約、勤務規則その他の定めにおいて相当の利益について定める場合には、相当の利益の内容を決定するための基準の策定に際して使用者等と従業者等との間で行われる協議の状況、策定された当該基準の開示の状況、相当の利益の内容の決定について行われる従業者等からの意見の聴取の状況等を考慮して、その定めたところにより相当の利益を与えることが不合理	⑤ 계약, 근무 규칙, 그 밖의 규정에서 상당한 이익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책정 시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서 행해지는 협의 상황, 책정된 해당 기준의 개시 상황, 상당한 이익의 내용 결정에 대하여 행해지는 종업원 등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바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い。
6 経済産業大臣は、発明を奨励するため、産業構造審議会の意見を聴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考慮すべき状況等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指針を定め、これ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7 相当の利益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場合又はその定めたところにより相当の利益を与えることが第五項の規定により不合理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受けるべき相当の利益の内容は、その発明により使用者等が受けるべき利益の額、その発明に関連して使用者等が行う負担、貢献及び従業者等の処遇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⑥ 경제산업대신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려할 상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⑦ 상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제5항 규정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4항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상당한 이익의 내용은 그 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액, 그 발명과 관련한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자 등의 처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条（特許出願）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願書を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許出願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二 発明者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
2 願書には、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必要な図面及び要約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6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② 원서에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前項の明細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発明の名称 二　図面の簡単な説明 三　発明の詳細な説明	③ 제2항의 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前項第三号の発明の詳細な説明の記載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その実施を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に明確かつ十分に記載したものであること。 二　その発明に関連する文献公知発明（第二十九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発明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うち、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特許出願の時に知っているものがあるときは、その文献公知発明が記載された刊行物の名称その他のその文献公知発明に関する情報の所在を記載したものであること。	④ 제3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지는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에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제29조제1항제3호의 발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 시에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밖의 그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한 것
5　第二項の特許請求の範囲には、請求項に区分して、各請求項ごとに特許出願人が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発明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る事項のすべて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一の請求項に係る発明と他の請求項に係る発	⑤ 제2항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다른 청구항에 관련된 발

明とが同一である記載となることを妨げない。 6 第二項の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発明が発明の詳細な説明に記載したものであること。 二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発明が明確であること。 三 請求項ごとの記載が簡潔であること。 四 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記載されていること。 7 第二項の要約書には、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記載した発明の概要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명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일 것 2.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할 것 3. 각 청구항의 기재가 간결할 것 4.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될 것 ⑦ 제2항의 요약서에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개요,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条の二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前条第二項の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必要な図面及び要約書に代えて、同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り明細書又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すべきものとされる事項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語で記載した書面及び必要な図面でこれに含まれる説明をその外国語で記載したもの（以下「外国語書面」という。）並びに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要約書に記載すべきもの	**제36조의2**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2항의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대신하여 동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세서 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서면 및 필요한 도면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설명을 그 외국어로 기재한 것(이하 “외국어서면”이라 한다) 및 동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요약서에 기재하여

とされる事項をその外国語で記載した書面（以下「外国語要約書面」という。）を願書に添付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を願書に添付した特許出願（以下「外国語書面出願」という。）の出願人は、その特許出願の日（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あつては、同項に規定する先の出願の日、第四十三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二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あつては、最初の出願若しくはパリ条約（千九百年十二月十四日にブラッセルで、千九百十一年六月二日にワシントンで、千九百二十五年十一月六日にヘーグで、千九百三十四年六月二日にロンドンで、千九百五十八年十月三十一日にリスボンで及び千九百六十七年七月十四日にストックホルムで改正さ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に関する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のパリ条約をいう。以下同じ。）第四条Ｃ（４）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みなされた出願又は同条Ａ（２）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認められた出願の日、第四	야 하는 사항을 그 외국어로 기재한 서면(이하 "외국어 요약서면"이라 한다)을 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을 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이하 "외국어 서면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일[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출원일,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최초 출원이나 파리 조약(190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 및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1983년 3월 20일 파리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C(4)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본 출원 또는 동조 A(2)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일,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

十一条第一項、第四十三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二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二以上の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あつては、当該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した出願の日のうち最先の日。第六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から一年四月以内に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日本語による翻訳文を、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外国語書面出願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第四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又は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本文の期間の経過後であつても、その特許出願の分割、出願の変更又は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の日から二月以内に限り、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日本語による翻訳文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출원일 중 가장 이른 날. 제64조제1항에서 같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일본어 번역문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어 서면 출원이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 경과 후라도 그 특허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特許庁長官は、前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翻訳文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きは、同項ただし	③ 특허청 장관은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동항 단서에

書に規定する期間。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内に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翻訳文の提出がなかつたときは、外国語書面出願の出願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서 규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외국어 서면 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り、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翻訳文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번역문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前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外国語書面（図面を除く。）の第二項に規定する翻訳文の提出がなかつ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は、同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の時に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す。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외국어 서면(도면을 제외한다)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동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경과 시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
6　前項の規定により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特許出願の出願人は、第四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当該翻訳文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り、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及び外国語要約書面の翻訳文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⑥ 제5항 규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본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번역문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7　第四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翻訳文は、第二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が満了する時	⑦ 제4항 또는 제6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번역문은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

に特許庁長官に提出されたものとみなす。 ８　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の翻訳文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及び図面と、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要約書面の翻訳文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要約書とみなす。	되는 때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의 번역문은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및 도면으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요약서면의 번역문은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요약서로 본다.
第三十七条 二以上の発明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的関係を有することにより発明の単一性の要件を満たす一群の発明に該当するときは、一の願書で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37조** 둘 이상의 발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군(一群)의 발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의 원서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第三十八条（共同出願） 特許を受ける権利が共有に係るときは、各共有者は、他の共有者と共同でなければ、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38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와 관련된 때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第三十八条の二（特許出願の日の認定） 特許庁長官は、特許出願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特許出願に係る願書を提出した日を特許出願の日として認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8조의2**(특허출원일의 인정) ① 특허청 장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에 관련된 원서를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一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旨の表示が明確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特許出願人の氏名若しくは名称の記載がなく、又はその記載が特許出願人を特定できる程度に明確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三 明細書（外国語書面出願にあつては、明細書に記載すべきものとされる事項を第三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語で記載した書面。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添付されていないとき（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特許出願をするときを除く。）。 2 特許庁長官は、特許出願が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対し、特許出願について補完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り、その補完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により補完をするに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続の補完に係る書面（以下「手続補完書」という。）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同項の規定により明細書について補完をする場合には、手続補完書の提出と同時	1. 특허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 특허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기재되지 않거나 그 기재가 특허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명세서(외국어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36조의2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서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제3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특허청 장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보완에 관련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 규정에 따라 명세서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

に明細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는 절차보완서의 제출과 동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明細書について補完をする場合には、手続補完書の提出と同時に第三十六条第二項の必要な図面（外国語書面出願にあつては、必要な図面でこれに含まれる説明を第三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語で記載した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⑤ 제3항 규정에 따라 명세서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서의 제출과 동시에 제36조제2항의 필요한 도면(외국어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도면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설명을 제36조의2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있다.
6 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が第三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その補完をし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は、手続補完書を提出した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いて、特許庁長官は、手続補完書を提出した日を特許出願の日として認定するものとする。	⑥ 제2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특허청 장관은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인정한다.
7 第四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明細書は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ものと、第五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図面は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⑦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는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제5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도면은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特許庁長官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が第三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その補完をしないときは、その特許出願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⑧ 특허청 장관은 제2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을 각하할 수 있다.
9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	⑨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기

前に、そ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執るべき手続を執つ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当該手続は、その通知を受けたことにより執つた手続とみなす。	전에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집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집행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절차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집행한 절차로 본다.
第三十八条の三（先の特許出願を参照すべき旨を主張する方法による特許出願）	**제38조의3**(선특허출원을 참조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출원)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外国語書面出願をする場合を除き、第三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願書に明細書及び必要な図面を添付することなく、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外国においてした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先の特許出願」という。）を参照すべき旨を主張する方法により、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特許出願が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서면 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6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서에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자가 한 특허출원(외국에서 한 출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특허출원”이라 한다)을 참조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前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特許出願を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及び先の特許出願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当該特許出願と同時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및 선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特許出願をし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当該特許出願に係る願書に添付して提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특허출원에 관련된 원서에

出すべき明細書及び必要な図面並びに同項に規定する方法における主張に係る先の特許出願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첨부하여 제출할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동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서의 주장에 관련된 선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明細書及び図面に記載した事項が、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おける主張に係る先の特許出願の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当該先の特許出願が、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外国において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出願に際し提出した書類であつて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相当するもの）に記載した事項の範囲内にない場合は、その特許出願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り明細書及び図面を提出した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서의 주장에 관련된 선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그 선특허출원이 외국어 서면 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어 서면, 외국에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출원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상당하는 것)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제38조의2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규정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明細書及び図面は、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⑤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도면은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前各項の規定は、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第四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及び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に基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련된 특허출원 및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

づく特許出願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三十八条の四（明細書又は図面の一部の記載が欠けている場合の通知等）	**제38조의4**(명세서 또는 도면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통지 등)
特許庁長官は、特許出願の日の認定に際して、願書に添付されている明細書又は図面（外国語書面出願にあつては、明細書に記載すべきものとされる事項を第三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語で記載した書面又は必要な図面でこれに含まれる説明を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語で記載した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その一部の記載が欠け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その旨を特許出願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특허청 장관은 특허출원일 인정 시에 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외국어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36조의2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서면 또는 필요한 도면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설명을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일부 기재의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り、明細書又は図面について補完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다.
3　前項の規定によりその補完をするに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明細書又は図面の補完に係る書面（以下この条において「明細書等補完書」という。）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완에 관련된 서면(이하 이 조에서 “명세서 등 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が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内にその補完をし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は、第三十八条の二第一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明細書等補完書を提出した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その補完が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二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係るものであつて、かつ、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た明細書等補完書に記載した内容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範囲内に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기간 내에 보완한 때에 그 특허출원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6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등 보완서를 제출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완이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4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것이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등 보완서에 기재한 내용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二項の補完をした特許出願が、第三十八条の二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場合であつて、その補完に係る手続補完書を第三項の規定により明細書等補完書を提出した後に提出し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手続補完書を提出した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완을 한 특허출원이 제38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항 규정에 따라 명세서등보완서를 제출한 후에 그 보완에 관련된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 그 특허출원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
6　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補完をした明細書又は図面は、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⑥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완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第二項の補完をし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	⑦ 제2항의 보완을 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り、第三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た明細書等補完書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에 한하여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등보완서를 철회할 수 있다.
８　前項の規定による明細書等補完書の取下げがあつたときは、その補完は、され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⑧ 제7항 규정에 따른 명세서 등 보완서를 철회한 때에는 보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９　第三十八条の二第九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前に執つた手続に準用する。	⑨ 제38조의2제9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집행한 절차에 준용한다.
１０　前各項の規定は、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第四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及び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제46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련된 특허출원 및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三十八条の五（特許出願の放棄又は取下げ）	**제38조의5**(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철회)
特許出願人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仮専用実施権を有す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特許出願を放棄し、又は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가전용실시권을 가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특허출원을 포기 또는 철회할 수 있다.
第三十九条（先願）	**제39조**(선원)
同一の発明について異なつた日に二以上の特許出願があつたときは、最先の特許出願人のみが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특

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同一の発明について同日に二以上の特許出願があつたときは、特許出願人の協議により定めた一の特許出願人のみが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協議が成立せず、又は協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いずれも、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모두 특허를 받지 못한다.
3 特許出願に係る発明と実用新案登録出願に係る考案とが同一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特許出願及び実用新案登録出願が異なつた日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特許出願人は、実用新案登録出願人より先に出願をした場合にのみ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③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련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 서로 다른 날에 그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된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인보다 먼저 출원한 경우에만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特許出願に係る発明と実用新案登録出願に係る考案とが同一である場合（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第四十四条第二項（第四十六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当該特許出願の時に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に係る発明とその実用新案登録に係る考案とが同一であ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その特許出願及び実用新案登録出願が同日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	④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련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제44조제2항(제4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발명과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같은 날 한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하나

きは、出願人の協議により定めた一の出願人のみが特許又は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協議が成立せず、又は協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特許出願人は、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의 출원인만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특허출원인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한다.
5　特許出願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特許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若しくは審決が確定し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登録出願は、第一項から前項まで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初めから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第二項後段又は前項後段の規定に該当することにより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又は審決が確定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포기, 철회 또는 각하된 때,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 규정에 해당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特許庁長官は、第二項又は第四項の場合は、相当の期間を指定して、第二項又は第四項の協議をしてその結果を届け出るべき旨を出願人に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⑥ 특허청 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제2항 또는 제4항의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7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した期間内に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ないときは、第二項又は第四項の協議が成立し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⑦ 특허청 장관은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간 내에 동항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第四十条 削除	**제40조** 삭제
第四十一条（特許出願等に基づく優先権主張）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その者が特許又は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登録出願であつて先にされたもの（以下「先の出願」という。）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先の出願が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に基づいて優先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先の出願について仮専用実施権を有す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特許出願の際に、その承諾を得ている場合に限る。 一　その特許出願が先の出願の日から一年以内にされたものでない場合（その特許出願を先の出願の日から一年以内に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であつて、かつ、その特許出願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を除く。） 二　先の出願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に	**제41조**(특허출원 등에 기초하는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그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먼저 행해진 것(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선출원이 외국어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어 서면)에 기재된 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하여 가전용실시권을 가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시에 그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한 것이 아닌 경우(그 특허출원을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특허출원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 것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선출원이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분할에 관

係る新たな特許出願、第四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若しくは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法第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実用新案登録出願若しくは実用新案法第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である場合	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제46조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련된 특허출원이나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신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三 先の出願が、その特許出願の際に、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又は却下されている場合	3.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 시에 포기, 철회, 또는 각하된 경우
四 先の出願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際に、査定又は審決が確定している場合	4. 선출원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시에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五 先の出願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際に、実用新案法第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設定の登録がされている場合	5. 선출원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시에 「실용신안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정의 등록이 된 경우
2 前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うち、当該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された先の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当該先の出願が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当該先の出願が同項若しくは実用新案法第八条第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 중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해당 선출원이 외국어 서면출원이 경우에는 외국어 서면)에 기재된 발명[해당 선출원이 동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

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二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出願である場合には、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の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された出願に係る出願の際の書類（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に記載された発明を除く。）についての第二十九条、第二十九条の二本文、第三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三十九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六十九条第二項第二号、第七十二条、第七十九条、第八十一条、第八十二条第一項、第百四条（第六十五条第六項（第百八十四条の十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第百二十六条第七項（第十七条の二第六項、第百二十条の五第九項及び第百三十四条の二第九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同法第七条第三項及び第十七条、意匠法第二十六条、第三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十二条第二項並びに商標	권 주장 또는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관련된 출원 시의 서류(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상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대한 제29조, 제29조의2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9조제2항제2호, 제72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제1항, 제104조[제65조제6항(제184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7항(제17조의2제6항, 제120조의5제9항 및 제134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7조제3항 및 제17조, 「의장법」 제26조,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상표법」(소화34<1959>년 법률 제127호) 제29조, 제33조의2제1항 및 제33조의3제1항(이들 규정을 동법 제6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

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七号）第二十九条並びに第三十三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十三条の三第一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六十八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特許出願は、当該先の出願の時にされたものとみなす。	당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外国語書面出願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のうち、当該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された先の出願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当該先の出願が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当該先の出願が同項若しくは実用新案法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二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出願である場合には、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の優先権の主張の基礎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외국어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외국어 서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나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해당 선출원이 외국어 서면출원이 경우에는 외국어 서면)에 기재된 발명[해당 선출원이 동항이나 「실용신안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4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관련된 출원 시 서류(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

とされた出願に係る出願の際の書類（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に記載された発明を除く。）については、当該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掲載公報の発行又は出願公開がされた時に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出願公開又は実用新案掲載公報の発行がされたものとみなして、第二十九条の二本文又は同法第三条の二本文の規定を適用する。	에 상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게재공보의 발행 또는 출원공개된 때에 그 선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 또는 실용신안게재공보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제29조의2 본문 또는 동법 제3조의2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を主張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及び先の出願の表示を記載した書面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四十二条（先の出願の取下げ等）	**제42조**(선출원의 철회 등)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された先の出願は、その出願の日から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時に取り下げ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先の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ている場合、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査定若しくは審決が確定している場合、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実用新案法第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設定の登録がされている場合又は当該先の出	①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포기, 철회 또는 각하된 경우, 그 선출원에 대하여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선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정의 등록이 된 경우 또는 그 선출원에 기초하는

願に基づく全ての優先権の主張が取り下げられてい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모든 우선권의 주장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２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の出願人は、先の出願の日から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後は、その主張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일부터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그 주장을 철회하지 못한다.
３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が先の出願の日から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取り下げられたときは、同時に当該優先権の主張が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す。	③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부터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철회된 때에는 동시에 그 우선권의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第四十三条（パリ条約による優先権主張の手続）	**제43조**(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절차)
パリ条約第四条Ｄ（１）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について優先権を主張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並びに最初に出願をし若しくは同条Ｃ（４）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みなされた出願をし又は同条Ａ（２）の規定により最初に出願を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パリ条約の同盟国の国名及び出願の年月日を記載した書面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파리조약 제4조D(1)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하거나 제4조C(4)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을 하거나 제4조A(2) 규정에 따라 최초로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 파리조약의 동맹국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した者は、最初に出願をし、若しくはパリ条約第四条Ｃ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는 최초로 출원하거나 파리조약 제4조C(4) 규

（４）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みなされた出願をし、若しくは同条Ａ（２）の規定により最初に出願を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パリ条約の同盟国の認証がある出願の年月日を記載した書面、その出願の際の書類で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及び図面に相当するものの謄本又はこれらと同様な内容を有する公報若しくは証明書であつてその同盟国の政府が発行したものを次の各号に掲げる日のうち最先の日から一年四月以内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을 하거나 제4조A(2) 규정에 따라 최초로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 파리조약 동맹국의 인정이 있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그 출원 시의 서류로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상당하는 것의 등본 또는 이와 동등한 내용이 포함된 공보 또는 증명서로서 그 동맹국 정부가 발행한 것을 다음 각 호 중 가장 이른 날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一　当該最初の出願若しくはパリ条約第四条Ｃ（４）の規定により当該最初の出願とみなされた出願又は同条Ａ（２）の規定により当該最初の出願と認められた出願の日	1. 해당 최초 출원 또는 파리조약 제4조C(4)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 또는 제4조A(2) 규정에 따라 해당 최초 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일
二　その特許出願が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場合における当該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した出願の日	2. 그 특허출원이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의 해당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三　その特許出願が前項、次条第一項（第四十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十三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他の優先権の主張を伴う場合における当該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した出願の日	3. 그 특허출원이 제1항, 제43조의2제1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른 다른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의 그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로 한 출원일

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した者は、最初の出願若しくはパリ条約第四条Ｃ（４）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みなされた出願又は同条Ａ（２）の規定により最初の出願と認められた出願の番号を記載した書面を前項に規定する書類ととも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同項に規定する書類の提出前にその番号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当該書面に代えてその理由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し、かつ、その番号を知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番号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는 최초의 출원이나 파리조약 제4조C(4) 규정에 따라 최초의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 또는 제4조A(2) 규정에 따라 최초의 출원으로 인정된 출원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와 함께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 전에 그 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면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며, 그 번호를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した者が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同項に規定する書類を提出しないときは、当該優先権の主張は、その効力を失う。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는다.
５　第二項に規定する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を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によりパリ条約の同盟国の政府又は工業所有権に関する国際機関との間で交換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した者が、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内	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전자(電磁)적 방법[전자(電子)적 방법, 자기(磁氣)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파리조약 동맹국 정부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관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출

に、出願の番号その他の当該事項を交換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特許庁長官に提出したときは、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二項に規定する書類を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원 번호, 그 밖의 해당 사항을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特許庁長官は、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同項に規定する書類又は前項に規定する書面の提出がなかつた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した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특허청 장관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限り、第二項に規定する書類又は第五項に規定する書面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⑦ 제6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8　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前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第二項に規定する書類又は第五項に規定する書面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その書類又は書面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⑧ 제6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책임 없는 이유로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제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9　第七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第二項に規定する書類又は第五項に規定する書面の提出があつ	⑨ 제7항 또는 제8항 규정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たときは、第四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이 제출된 때에는 제4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四十三条の二（パリ条約の例による優先権主張）

パリ条約第四条Ｄ（１）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について優先権を主張しようとしたにもかかわらず、同条Ｃ（１）に規定する優先期間（以下この項において「優先期間」という。）内に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者は、その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り、か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その特許出願をしたときは、優先期間の経過後であつても、同条の規定の例により、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優先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優先権を主張する場合に準用する。

제43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파리조약 제4조D(1)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C(1)에서 규정하는 우선기간(이하 이 항에서 “우선기간”이라 한다) 내에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던 자는 그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우선기간의 경과 후에라도 제4조 규정의 예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43조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四十三条の三

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者が同表の下欄に掲げる国においてした出願に基づく優先権は、パリ条約第四条の規定の例により、特許出願について、これ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国民又はパリ条約の同盟国の国民（パリ条約第三	世界貿易機関

제43조의3

① 다음 표 좌측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 우측의 국가에서 한 출원에 기초하는 우선권은 파리조약 제4조 규정의 예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일본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파리조약 제3조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条の規定により同盟国の国民とみなされる者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	の加盟国	규정에 따라 동맹국 국민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	
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の国民（世界貿易機関を設立するマラケシュ協定附属書一Ｃ第一条３に規定する加盟国の国民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	パリ条約の同盟国又は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C제1조3에서 규정하는 가맹국 국민을 말한다. 제2항에서 같다)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２　パリ条約の同盟国又は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国（日本国民に対し、日本国と同一の条件により優先権の主張を認めることとしているものであつて、特許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国」という。）の国民がその特定国においてした出願に基づく優先権及び日本国民又はパリ条約の同盟国の国民若しくは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の国民が特定国においてした出願に基づく優先権は、パリ条約第四条の規定の例により、特許出願について、これ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②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모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일본 국민에 대하여 일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국가로서 특허청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국”이라 한다)의 국민이 그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하는 우선권 및 일본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이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이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하는 우선권은 파리 조약 제4조 규정의 예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前二条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優先権を主張する場合に準用する。	③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四十四条　(特許出願の分割) 特許出願人は、次に掲げる場合に限り、二以上の発明を包含する特許出願の一部を一又は二以上の新たな特許出願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제44조**(특허출원의 분할) ① 특허출원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一　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ついて補正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又は期間内にするとき。	1.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때 또는 기간 내에 할 때
二　特許をすべき旨の査定（第百六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特許をすべき旨の査定及び第百六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に付された特許出願についての特許をすべき旨の査定を除く。）の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するとき。	2. 특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제16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 규정에 따른 특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 및 제16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에 부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을 제외한다)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때
三　拒絶をすべき旨の最初の査定の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月以内にするとき。	3. 거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초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때
2　前項の場合は、新たな特許出願は、もとの特許出願の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新たな特許出願が第二十九条の二に規定する他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法第三条の二に規定する特許出願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특허출원은 원래의 특허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특허출원이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これらの規定の適用及び第三十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경우의 이들 규정의 적용 및 제30조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三条第二項（第四十三条の二第二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四十三条第二項中「最先の日から一年四月以内」とあるのは、「最先の日から一年四月又は新たな特許出願の日から三月のいずれか遅い日まで」とする。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의 제43조제2항[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 중 “가장 이른 날부터 1년 4개월 이내”는 “가장 이른 날부터 1년 4개월 또는 새로운 특허출원일부터 3개월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4 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場合には、もとの特許出願について提出された書面又は書類であつて、新たな特許出願について第三十条第三項、第四十一条第四項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四十三条の二第二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当該新たな特許出願と同時に特許庁長官に提出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 또는 서류로서 새로운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0조제3항, 제41조제4항 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이들 규정을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그 새로운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5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三十日の期間は、第四条又は第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が延長された	⑤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30일의 기간은 제4조 또는 제10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연

ときは、その延長された期間を限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한정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三月の期間は、第四条の規定により第百二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が延長されたときは、その延長された期間を限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⑥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3개월의 기간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1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한정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7　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規定する期間内にその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れら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ら十四日（在外者にあつては、二月）以内で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⑦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자가 그 책임 없는 이유로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서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그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第四十五条 削除	**제45조** 삭제
第四十六条（出願の変更）	**제46조**(출원의 변경)
実用新案登録出願人は、その実用新案登録出願を特許出願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実用新案登録出願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意匠登録出願人は、その意匠登録出願を特許出願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意	②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의장등록출

匠登録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最初の査定の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月を経過した後又はその意匠登録出願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た後（その意匠登録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最初の査定の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月以内の期間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원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초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그 의장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초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三月の期間は、意匠法第六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第四条の規定により意匠法第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が延長されたときは、その延長された期間を限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③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3개월의 기간은 「의장법」 제6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한정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があつたときは、もとの出願は、取り下げたものとみなす。	④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원래의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を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期間内にその出願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を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三年の期間内にその出願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れら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	⑤ 제1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을 하는 자가 그 책임 없는 이유로 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을 하는 자가 그 책임 없는 이유로 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3년의 기간 내에 그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서 이들 규정에서 정

ら十四日（在外者にあつては、二月）以内で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出願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하는 기간의 경과 후 6개월 내에 그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第四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の場合に準用する。	⑥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四十六条の二（実用新案登録に基づく特許出願）	**제46조의2**(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는 특허출원)
実用新案権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己の実用新案登録に基づいて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実用新案権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一　その実用新案登録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たとき。	1.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
二　その実用新案登録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又はその実用新案登録について、実用新案登録出願人又は実用新案権者から実用新案法第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実用新案技術評価（次号において単に「実用新案技術評価」という。）の請求があつたとき。	2.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기술평가(제3호에서 “실용신안기술평가”라 한다) 청구한 때
三　その実用新案登録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又はその実用新案登録について、実用新案登録出願人又は実用新案権者でない	3.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

者がした実用新案技術評価の請求に係る実用新案法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最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十日を経過したとき。	가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에 관련된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최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
四 その実用新案登録について請求された実用新案法第三十七条第一項の実用新案登録無効審判について、同法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最初に指定された期間を経過したとき。	4.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청구된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
2 前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は、その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記載した事項が当該特許出願の基礎とされた実用新案登録の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記載した事項の範囲内にあるものに限り、その実用新案登録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の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その特許出願が第二十九条の二に規定する他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法第三条の二に規定する特許出願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これらの規定の適用並びに第三十条第三項、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四十八条の三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은 그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해당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들 규정의 적용, 제30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단서 및 제48조의3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を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同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規定する期間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는 자가 그 책임 없는 이유로 동항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할

を経過するまでにその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れら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ら十四日（在外者にあつては、二月）以内で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	때까지 그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서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 実用新案権者は、専用実施権者、質権者又は実用新案法第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第三十五条第一項、実用新案法第十八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第七十七条第四項若しくは実用新案法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常実施権者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실용신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3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77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5 第四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をする場合に準用する。	⑤ 제4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